

위수령 존치 여부 검토결과

< 법무관리관, '17. 3. 13. (월)>

□ 개요

‘위수령 폐기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 요구’에 대한 검토결과임

* 위수령 (대통령령): 육군의 주둔지역 경비, 지역 내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 ('50.3.27.)

□ 존치 쟁점

-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어 존립근거가 희박하므로 폐지되어야 함

□ 검토결과

- 「위수령」 존치 필요 여부
 - 주둔지역 경비 및 시설물 보호 등 육군 주둔여건 보장 규정 필요
 - * 제1조(목적) 주둔 지역의 경비,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등 보호
 - 평시 軍이 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규정 필요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법」 등에 행정응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「위수령」은 軍내부에서의 행정(군사) 응원의 요건 및 절차 규정
 - * 제12조(병력출동) 재해 또는 비상사태시, 서울특별시·부산광역시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,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동
- 법령 보완사항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
 - 재난비상사태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응원 요건·지원범위·한계 등을 규율하는 법령안에 대한 연구 필요
 - 2003년 개정 이후 현실에 맞게 지구 수정 및 불명확한 용어 개념정립

□ 향후계획

- KIDA에 연구과제 부여 ('17년 상반기)